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존 운영 사무에 시설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탁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4. 주요내용

1) 시설현황

명칭	소재지	연면적	정원	현원	운영인력
개나리 어린이집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989.38㎡ (지하1층~지상2층)	99명	93명	26명

2) 운영현황

운영방식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
민간위탁	이순화 원장	2024. 4. 1. ~ 2027. 2. 28.	830,761천원

3) 위탁사무 개요

○ 위탁방식 : 행정재산 관리위탁(재위탁)

-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 위탁기간 : 5년(2027. 3. 1. ~ 2032. 2.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및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 833,982천원(민간위탁금)

-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품관리 전반

4) 관리수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식 :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

○ 심사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직장어린이집은 직원의 근무 여건 안정과 직결된 시설로 학사일정 중단 없는 연속적·안정적 보육 지원이 필요함.
경제적 효율성	○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인력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줄여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대상으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에 따라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종 합 의 견	○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운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보육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운영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자녀의 보육 지원 및 후생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남양주시청 개나리어린이집은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시설로서, 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함.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인력 관리 역량, 보육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2023. 12. 26.>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⑤ (생 략)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① ~ ④ (생 략)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